

서울특별시

우편번호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31/(02)3707-9031~2/전송(02)3707-9049
처리부서: 재산관리과(서소문별관 13층)/과장: 이상설 담당사무관: 조만형 담당자: 정명진

문서번호 재산 45500 - 1249
시행일자 1998. 9. 10. ()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 결
참조

재고시공고
1998. 9. 10
제 1998-493호

취급			시 장
보존			
국장	전 결	김 은 격	
과장	이상설	법무담당관 심사필	
기안	김 병 인	재산총괄 조만형	협 조

제목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행정자치부 공기 13330-401 ('98. 8.20) 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준칙 시달 및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하며, 개정하기 전에 개정규칙(안)을 미리 시민에게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입법예고(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 홍보담당관

제목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게재의뢰**

결재
1998. 9. 10
재산관리과장

의견대조필
정명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개정규칙(안)을 미리 시민에게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하니,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입법예고(안) 1부. 끝.

재 산 관 리 과 장

078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8 - 013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998년 9월 일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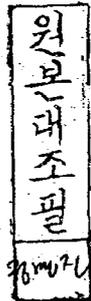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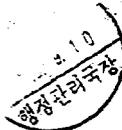
1. 자치법규 개정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2. 개정의 주요내용과 그 취지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에 있어 허가취소시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불공정한 규정을 취소 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토록 변경

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만료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토록 함.

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서식에 있는 규정중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후 동 재산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배상액은 시장의 결정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불공정한 규정을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토록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



- 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서식에 있는 규정중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후 동 재산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배상액은 시장의 결정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불공정한 규정을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토록 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
- ⑥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서식에 있는 규정중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시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불공정·불평등한 규정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토록 변경
- ⑦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서식에 있는 규정중 "시장은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소유권 이전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변경
- ⑧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서식에 있는 규정중 본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시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불공정한 규정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토록 변경
- ⑨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서식에 있는 규정중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납하는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 등 채권 확보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원본대조필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월 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재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3707-9031~8, FAX 3707-90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